

의안번호	제 43 호
의결연월일	1999. . .

의결사항

사천시청맞춤·면·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청
제출연월일	1999. 9. 11.

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3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'99. 9. 11.

제 출 자 : 사천시장

1. 제안이유

봉계취락구조개발사업이 인가됨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 지번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곤명면사무소 소재지중 “곤명면 봉계리 203-2번지”를 “곤명면 봉계리 990-8번지”로 함.(별표)

3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

4. 개정조례 (안) : 별첨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청맞춤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(안)

사천시청맞춤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시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소재지 중 곤명면란 소재지 중 “203-2”를 “990-8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